

의 안 번 호	제 호	의 결 사 항
의 결 연 월 일	2022. . . (제 회)	

의 약 품 물 류 협 동 조 합 의 구 성 및 운 영
등 에 관 한 규 정 폐 지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보건복지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2. . .

법 제 처 심사 전

1.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

의약품물류협동조합 관련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제8항의 규정이 삭제('11.12월)되어 해당 규정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하위법령의 근거가 없어져 사문화되었으므로 해당 규정으로 인해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정확한 법령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본 시행령을 폐지하고자 함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해당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의약품물류협동조합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규정 폐지령안

의약품물류협동조합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규정을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연 락 처	(044) 202 - 2493